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정 2016.12.7
개정 2017.10.17
개정 2018.1.11
개정 2018.8.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Seoul Energy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국내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설치, 운영, 대여 및 양도
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주요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 그 외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⑥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사 내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조직 및 정원) ①공사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 및 정원 외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

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①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①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일시차입 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3.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9.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제①항 제5호의 중요한 규정의 내용이 법령, 정관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정되거나,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

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①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의장은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집행 후 추인토록 할 수 있다.

④제③항에서 정한 서면의결 및 집행 후 추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1조(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예산과 결산)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처리) ①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6조(재산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사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37조(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38조(기금)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

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상환에 대한 보증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40조(차관)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외국차관 상환에 대한 보증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자금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요청 등) ①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한시적인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협정 및 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 설립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소속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하며, 근로조건 등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부 칙(2017. 12. .)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정원표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조정된 업무직 및 전문직의 정원은 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8.)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5조)

기 구 표

※ 사장, 감사, 3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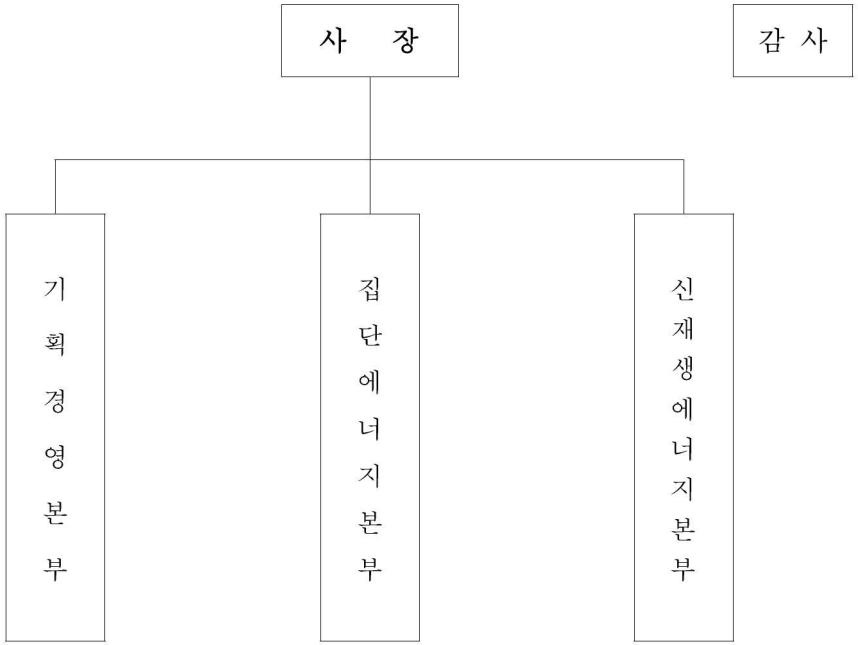

〈별표2〉 (제15조)

정 원 표

(단위:명)

총정원	임원	직 원							
		계	일 반 직					전문직 (연구직)	운영 지원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280	4	276	231	6	10	27	188	5	40